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제의)

의 안 번 호	2022-43
------------	---------

발의연월일: 2022. 3. 25.

발 의 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 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급식안전위원회 설치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방사성물질 검출 및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마. 지역 주민 등의 교육 및 연수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 사.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학교급식법」 제3조, 「식품위생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 나. 협조부서: 위생관리과
- 다. 입법예고: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물질, 미세플라스틱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선물질 검사 체계)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연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집행할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여러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제5조(급식안전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시행을 위해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내규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을 위해,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1.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의 보호자
2. 보건소장 및 교육지원부서의 장
3.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급식 안전 전문가
4. 시민단체 추천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 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및 관련 운영위원회,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연수) ① 구청장은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식품과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학교 및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구청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임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